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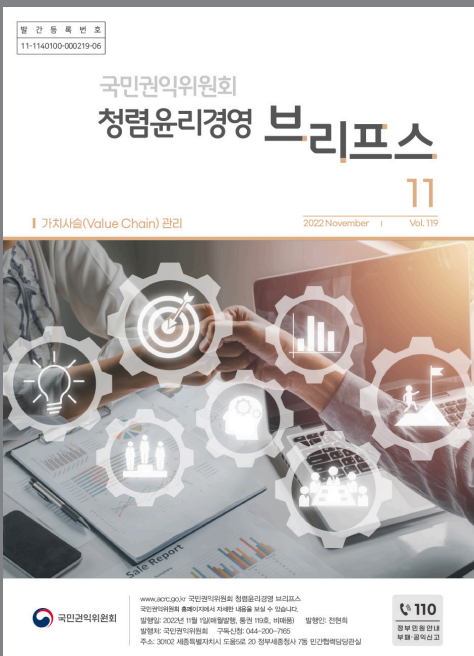
11

■ 가치사슬(Value Chain) 관리

2022 November |

Vol. 119





COVER STORY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체 과정을 가치사슬이라 한다. 가치 창출 과정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이 결합되고,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 환경, 인권 문제가 원청기업의 리스크로 연계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활동 중 하나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청렴윤리경영의 영역을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까지 확장하고, 가치사슬 관리에 대해 살펴본다.

01	전문가 코칭	04
	기업의 가치사슬과 부패 리스크 관리	
02	사례돌보기	07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 관리 사례	
03	보고서리뷰	11
	가치사슬 내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방안	
04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13
	가치사슬 관리 의무에 대한 지침	
05	문화 속 기업윤리	19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하고 공유 받아야 한다. 영화, '조이'	
06	뉴스클립	20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 국내외 동향	
07	웹툰: 바로보는 기업윤리	22
	우리도 ESG	
08	행사소식	23
09	퀴즈	24



전문가 코칭

기업의 가치사슬과 부패 리스크 관리

이은경 실장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Q1. 청렴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사슬¹⁾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공급망 관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 공급망은 점점 더 글로벌해지고 복잡성을 띠며, 규모도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됩니다. 기존 공급망 관리에서 기술/품질 우수성, 비용 효과성, 납기 신속성, 신뢰성과 안정성은 공급망 및 조달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집중해온 분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 공급, 제조, 유통,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보건안전, 지정학적 분쟁, 원자재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분쟁 광물 및 현대 노예, 뇌물 부패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는 공급망 위험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파트너, 제3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제3자 활용이 증가하고 공급망에서 부패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데에는 다음과

1) 가치사슬과 공급망(공급사슬)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치의 창출과 분배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글로벌 공급사슬은 최종재 생산기업과 납품기업 간 조달 관계가 핵심이다. (편집자 추가, 국내 향만익존 산업의 가치사슬과 공급망 연계성 강화방안-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12.)

같은 강력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글로벌 경제는 신규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들에 제공하고, 성장률이 높은 시장은 일반적으로 본사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부패 가능성이 높고 기업 문화도 다릅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해외업무위탁, 제3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경영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부패 리스크 또한 상당 수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기업이 낮은 수준의 반부패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패 유혹을 받거나 제3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사업 파트너의 부패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기업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기업의 부패 리스크 관리를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패한 사업 파트너와 연루된 기업은 명성을 잃고,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 ESG 경영에서도 투명한 거버넌스와 윤리적 경영활동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Q2. 청렴윤리경영 측면에서 효과적인 가치사슬 관리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이 가치사슬의 초점을 주요 협력업체에 맞춤으로써 생기는 이익도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부패와 뇌물, 인권, 환경 문제, 법적 피해와 평판 손상 등의 리스크에 취약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협력업체에 더 많은 사업 운영을 위탁함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치사슬 환경에서 기업이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프로그램 및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몇 년 전 글로벌 기업들의 고위 준법감시임원 267명이 참여한 조사²⁾에 따르면, 40%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뇌물 및 부패 리스크가 매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리스크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해외 진출(55%), 제3자와의 관계 증가(54%), 기존의 규제 집행 증가(51%)를 꼽았습니다. 또한,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벌금 상위 10건의 뇌물부패 이슈는 대다수 컨설턴트, 대행업체, 합작기업 파트너 등과 같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이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3자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제3자가 기업이 요구하는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들의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투명성기구는 다음과 같은 제3자 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청렴성을 추구하는 지배구조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장하는 기업 환경 조성
2. 기업의 운영 전반에서 제3자 관리를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접근 방식 개발 시행
3. 제3자와 신뢰 및 건설적인 관계 형성 및 공동의 목표 마련
4. 모든 제3자의 파악하고 정보 수집, 분석
5. 제3자 리스크 평가 절차 및 실사 기준을 마련, 전체적인 뇌물방지 프로그램 설계, 발전
6. 제3자의 기준 준수 및 참여 유도, 리스크에 따른 적합한 절차 마련
7. 제3자에 대한 잠재 리스크 평가 및 적절한 수준의 사전 실사 실시
8. 권고 및 보고 체계와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활용으로 제3자와의 관계 관리
9. 엄격한 모니터링 절차 실시로 뇌물 사건 및 뇌물방지 프로그램 위반을 예방 및 파악
10. 제3자 부패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
11. 제3자 부패방지 관리의 현황에 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 공개

제3자 리스크 관리, TI UK / UNGC 한국협회 번역

기업은 위의 요소들을 고려해 공급망 관리 원칙을 세우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기본 사항이며, 기업 ESG 경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2) The Year of Global Expansion and Enforcement: 2016 Anti-Bribery and Corruption Benchmarking Report (Kroll and Ethisphere, 2016), p.11 and p.14.



사례돌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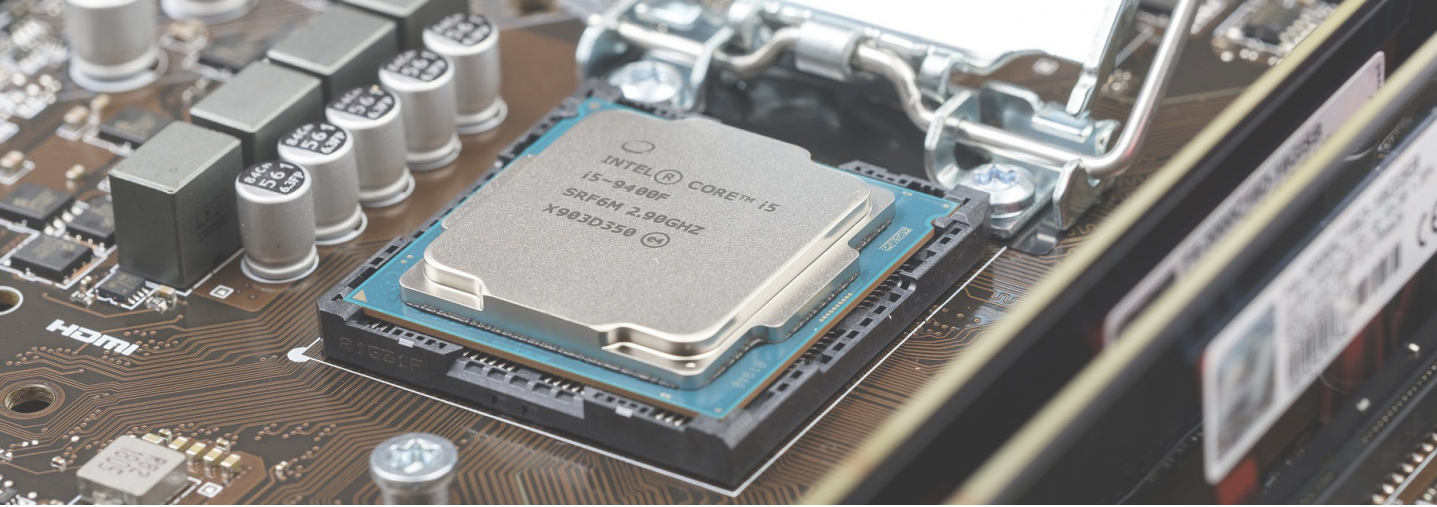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 관리 사례



VALUE CHAIN



가치사슬이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고객에게 최종재를 제공하기까지 부품, 기자재, 원료의 구매에서부터 조달, 제조, 운송, 유통 등 각 과정을 담당하는 공급업체들을 통칭하기도 한다.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공급업체 관리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으로, 공급망 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인텔

인텔은 미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회사로 스마트폰, 노트북, PC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석, 텅스텐, 금 등과 같은 광물자원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 광물들은 ‘분쟁광물(Conflict Mineral)’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유는 채굴지역이 주로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이며, 채굴과정에서 노동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로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목표로 삼고, 이에 따라 분쟁광물을 비롯하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광물의 채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인텔은 2009년 공급망에서 분쟁지역 광물 사용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고, 설문문을 통해 광물 공급업체의 채굴 원산지 추적성, 분쟁지역광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010년 분쟁지역광물 사용 의무공시를 시행하는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Section 1502)의 제정에 반대하던 기업, 단체들과는 달리 법안을 지지하고, 분쟁지역 광물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 것은 인텔의 가치사슬 관리 면모를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인텔은 글로벌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쳐 ESG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기업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사회적 책임(Responsible)과 포용성(Inclusive)을 갖추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미래를 창조한다(Enabling)는 비전을 발표하고 비전의 앞 글자를 따서 RISE 기술 이니셔티브(Intel RISE Technology Initiative, IRTI)를 발표했다. 이니셔티브의 내용은 완전한 수자용 재사용, 100% 녹색 에너지 구현, 제조분야 폐기물 제로, 여성과 소수자 임원 비율의 두 배 증가, 인권 프로그램의 확대이다.

인텔은 가치사슬 확립 및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텔은 지난 30년 간 반도체 제조 생태계에 포함된 120개 기업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파운드리 생태계에 속한 스타트업 및 기업들의 혁신기술 발굴을 지원할 계획으로 인텔 캐피탈과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자사의 이익 추구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협력업체를 지원한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2. 존슨 앤드 존슨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가 선정한 2022년 공급망 관리 상위 25개(The Gartner Supply Chain Top 25 for 2022) 기업에 존슨앤드존슨이 4위에 올랐다. 가트너는 기업 실적과 함께 ESG 지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매년 공급망 관리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이 공급망 관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이노베이션 협업 공간’을 회사 내에 구축하는 등 직원, 고객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은 협업을 통해 수술용 임플란트 공정 과정을 혁신하고, 물류 과정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우리의 신조-CREDO’에 기반을 둔 경영철학을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조-CREDO’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파트너사의 컴플라이언스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컴플라이언스를 단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하여 파트너사에게 매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는 협력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매년 진행하는 협력업체 역량평가에 사회·환경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역량평가 결과는 다시 협력업체에 금융, 기술 및 품질개선, 경쟁력 강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협력업체가 채용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인 협력업체 전용 온라인 채용관 활용 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략 및 제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솔루션 또한 제공한다.

이와 같이 유한킴벌리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참고

-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26>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8>
-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9>
-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08>
- <https://www.janssen.com/korea/company/companyInfo>
- 2022년 유한킴벌리 지속가능보고서(https://csr.yuhan-kimberly.co.kr/resources/file/yk_2022_kor.pdf)



가치사슬 내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방안

■ OECD(2018)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은 기업이 경제, 환경 및 사회발전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 공급망을 포함한 경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사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ESG의 G(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6단계로 제시한 실사지침 중 공급망 내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단계는 기업책임경영에 필요한 정책 및 관리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기업책임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로, 공급망 내 업체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부터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내 업체들과 기업책임경영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계약 형태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내 업체들이 기업책임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실사와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단계는 기업경영활동에서의 리스크 평가 실시이다. 이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공급망에서 실재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영향이란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기업경영활동으로 인해 사람이나 환경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중지시키거나 방지, 예방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를 거쳐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리스크를 단기간 내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기업실사 이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업실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의 방지에방 조치를 했다면, 이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가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실사를 통해 관련 회사에 부정적 영향의 예방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가 속한 산업계의 특성 및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급망 전체에서 책임윤리경영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단계에서는 기업실사를 통해 드러난 실재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고 의사소통한다. 특히 기업에 의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정보들을 쉽게 접근가능하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현지 언어로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단,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와 시기적절하고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6단계에서는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확인된 리스크의 경우 이를 직접 구제하거나 구제에 협력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부정적 영향 특히 인권 관련 문제의 경우 구제 방법 결정 시 영향권 내에 있는 협력업체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다.

모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기업실사 등을 통해 가치사슬 내 모든 회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협력업체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모회사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나친 경영개입 또는 형식적 관리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함께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가치사슬 관리 의무에 대한 지침

오늘날, 한 기업의 활동은 더 이상 해당 기업만의 개별적인 활동으로 존속할 수 없고 가치사슬의 유기적 연결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을 포함한 거버넌스 · 인권 · 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의무와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1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도입 배경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거버넌스 · 인권 · 환경 등 관리에 대한 EU 차원의 기업 의무 법제화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EU 의회는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에 실사 지침 발의를 요구하였고, EU 집행위는 2022년 2월 23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실사 지침')을 발표하였다. 실사 지침은 EU 의회 및 이사회 승인 시 발효되며, EU 회원국들은 발효일 기준 2년 내에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내법을 개정 · 적용해야 한다.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EU기업과 제3국 기업 중 고용인, 매출액, 산업군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EU 기업 여부	기업규모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 (해당 조건 동시충족시 적용)	예상 기업 수
EU 기업 (EU 회원국 법률에 의거 설립)	대기업 (Group1)	- 고용인 500명 초과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9,400개
	중견기업 (Group2)	- 고용인 251~500명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4천만(초과)~1.5억 유로 -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3,400개
제3국 기업 (제3국 법률에 의거 설립)	대기업 (Group1)	- 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전체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2,600개
	중견기업 (Group2)	- 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전체 순매출액 4천만(초과)~1.5억 유로 -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1,400개

2) 적용범위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실사 지침은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의 협력업체에 전반적으로 적용하며, 매년 협력업체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기업 자체, 자회사, 직접공급자, 하도급자, 간접공급자 등 해당 기업과 일정기간 비즈니스 관계 지속이 예상되며, 유의미하고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공급자 대상이다.

3) 적용시기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내, 고위험 산업의 중견기업은 지침 발효 4년 내 적용대상이 된다.

- EU 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지침을 채택하면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 2022년 4분기에 지침 채택시 대기업 적용시기는 2024년, 중견기업은 2026년으로 예상된다.

4) 공급망 실사 의무

인권·환경에 대한 내부 정책수립, 영향 파악·예방·대응·신고 접수 이행사항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① 기업 정책에 실사 내재화

기업은 실사 의무를 기업 정책에 통합하여 사내 실사 규정(due diligence policy)을 마련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 사내 실사 규정에는 △ 실사의무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 회사 직원 및 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 강령 △ 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대기업은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파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정적 영향 파악을 위해 기업은 독립적인 보고서 및 신고절차(complaints procedure)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잠재적 피해자와 논의 가능하다.
- 중견기업은 해당 고위험 산업(high-risk sectors)과 심각한(severe)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③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완화

기업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개인, 시민단체, 공급망 내 노동조합 및 피고용인 등)와 논의하여 예방 조치 계획 마련 및 시행한다.
- 직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계약상의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간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계약상의 보증 요청을 권장하나 의무는 아니다. (단, 향후 손해배상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의 보증을 받는 것이 안전함)

④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료 및 최소화

- 기업은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료 또는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기업 활동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다.
-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즉시 종료가 불가능할 경우, 적시에 시정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직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계약상의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간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계약상의 보증 요청을 권장한다.

⑤ 신고절차 확립 및 유지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잠재적인 또는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⑥ 실사 규정 및 조치의 효율성 점검

기업은 인권 및 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의 파악·예방·제거 관련 사내 실사 규정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운영 및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⑦ 실사의무 이행내용 공개

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5) 의무 위반 시 제재

회원국이 금전 및 행정 등 제재조치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특정행위 중단 명령, 임시조치 명령, 금전적 제재(벌금) 등을 제재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단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규모는 기업 매출액에 비례해야 한다.
- 기업 자체활동뿐 아니라 협력업체로 인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회원국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기업이 협력업체와 계약상의 보증 체결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2 독일 공급망 실사법

도입 배경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제정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UNGPs는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 책임의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한 기준으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이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에 의무를 부여한다.

독일은 2023년 1월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인권 보호 강화에 목표를 두었다.

주요 내용

공식 명칭	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시행 예정일	2023년 1월 1일
적용 대상	• 2023년부터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 • 2024년부터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 • 추후 적용 범위 평가 예정
주요 사항	•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최초 포함 •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 관할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 인권 보호 강화 • 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 규제
위반 시 벌금 (가능성)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 (매출과 관련된 벌금의 경우 연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 · 개발부(BMZ), 독일연방경제 · 기후보호부(BMWK), [csr-in-deutschland.de](https://www.csr-in-deutschland.de)]

1) 적용대상

- 2023년부터 독일에 근무하는 고용 인원이 30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약 900개의 기업에 해당한다.
- 2024년부터는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되는 기업은 독일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에도 해당한다.

2) 실사 의무

① 인권 침해·환경 피해 위험에 대한 실사 의무 포함

실사 의무의 핵심요소에는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식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② 전체 공급망에 실사 의무 적용

실사 의무는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을 포함해 직접 공급업체 및 간접 공급업체까지 적용하며, 기업 실사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력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예방 및 구제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독일 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함
직접 공급업체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력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예방 및 구제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직접 공급업체의 경우 가까운 사일내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시 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간접 공급 업체	• 잠재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실사 의무 즉시 적용 • 위험 분석 시행 • 위반 행위 최소화 및 방지 계획 실행 •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 시행. 이 경우 업계 전반의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것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두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 · 개발부(BMZ)]

인권보호 및 환경보호 관련 요구가 커져가는 글로벌 환경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 한국무역협회 (<https://zrr.kr/SKnl>)
- EU 공급망실사 지침 주요내용과 시사점 – KDB미래전략연구소 (<https://zrr.kr/UBQl>)
-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의미와 한계, Maren Leifker,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11월호(Vol.19, No.11)
-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zrr.kr/OUkF>)



문화 속
기업윤리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하고 공유 받아야 한다.

영화, '조이'



*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깨진 유리잔을 치운 걸레를 맨손으로 빨다가 손을 크게 다친 조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상상력으로 손으로 직접 빨지 않아도 되는 기발한 밀대걸레를 발명한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상품화에 성공하지만, 위기는 끊이지 않는다.

영화 '조이'는 기발하고 다양한 생활용품을 개발한 사업가 조이 망가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녀는 밀대걸레를 홈쇼핑에서 판매할 기회를 어렵게 얻지만,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쇼맨십으로만 판매하려는 쇼호스트로 인해 판매 부진으로 빚더미에 앉을 위기를 겪는다. 게다가 투자자의 말만 따르다가 특허권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투자자는 조이의 실패에 대해 '사업이란 원래 불공평하다', '너에겐 사업가로서 배짱과 센스가 없다'라고 지적한다.

조이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가사활동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까지 단계마다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투자자 등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연관되어야 한다. 조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창의력과 강한 책임감을 갖춘 사업가였지만, 이들 모두에게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지는 못했다. 그저 쇼호스트의 능력만 믿고, 그녀가 제품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특허권의 존재 여부와 개런티 지급의 정당성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은 개인이 아닌 여러 자원과 인력이 결합하는 유기체이며, 가치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부분에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망 내의 모든 관계자들 간 명확한 가치 공유, 그리고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2차 시범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청렴윤리경영 2차 시범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2차 시범운영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총 14개 기관으로,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각 기관들은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CP를 도입 ·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에 대한 심사는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며 우수기관에는 포상이 수여된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다시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관들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중남미 국가에 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전수하기 위해 대면 연수과정을 개설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코스타리카 감찰원과 파라과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정부가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및 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남미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동향

EU, 원자재법 제정 추진



EU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EU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리스크 관리, 공급망 강화, 지속가능 경쟁여건 형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키워드 수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역량, 연구·혁신(R&I)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RMA(Raw Materials Act)가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RMA 추진동향을 모니터링하고 EU측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MoneyS 2022. 10. 19.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01816123084138>

ESG 정보 공시제의 기준 표준화·단일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제 4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SG 정보 공시 제도가 많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효율적인 ESG 정보 공시기준을 통해 기업의 공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 정보 공시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ESG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시-평가-투자에 이르는 ESG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헤럴드 경제, 2022. 9. 16.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916000356&ACE_SEARCH=1



바로보는 기업윤리

웹툰

우리도 ESG



글로벌 경영 환경이 ESG를 향하고 있습니다.

변화에의 대응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가 됩니다.

*참고 <https://edu.acrc.go.kr>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 청렴교육 자료 > 청렴교육 시청각자료



행사소식

2022 THE ESG포럼



기업가치 상승에 있어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관련 제도와 현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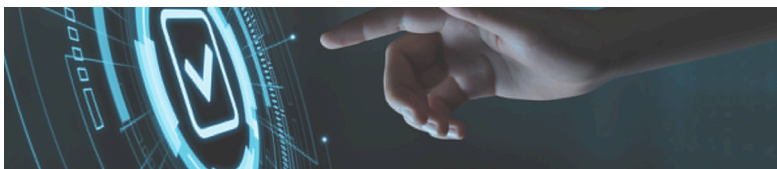
주최 조선비즈

일정 2022년 11월 15일(화)

장소 코리어나호텔 다이아몬드홀

참고 <https://e.chosunbiz.com/tc-events/2022-the-esg%ED%8F%AC%EB%9F%BC/>

Corporate Compliance & Ethics Forum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리스크 관리, 기업의 윤리 이슈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포럼

주최 Consero

일정 2022년 12월 11일(일) ~ 13일(화)

장소 The Biltmore Miami, Coral Gables, FL, USA

참고 <https://consero.com/events/corporate-compliance-ethics-forum-5/>



Q. 다음 중 가치사슬 관리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업책임경영 실사 도입
- ② 협력업체의 반부패 활동 지원
- ③ 협력업체와의 관계 단절
- ④ 기업실사 효과 모니터링

퀴즈 응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11월 20일 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유광렬님, 이봉국님, 최경복님, 이진숙님, 이태오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